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418
----------	------

발의연월일 : 2025. 3. 27.

발 의 자 : 이인선 · 조경태 · 송언석
조정훈 · 강선영 · 최은석
고동진 · 박준태 · 김성원
박충권 · 정동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4항 및 제17조의8제1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4항 중 “5명”을 “3명”으로 한다.

제17조의8제1항 중 “관세법인”을 “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둔 관세법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원 및 사무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4항 및 제17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3(사원 등) ① ~ ③ (생략)	제17조의3(사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u>5명</u>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④ ----- -- <u>3명</u> ----- -----.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의8(사무소 등) ① <u>관세법인</u> 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7조의8(사무소 등) ① <u>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둔 관세법인</u>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